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4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최은석・박덕흠・권성동

박충권 · 송언석 · 서일준

김상욱 · 김재섭 · 신성범
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해 제조된 신종유사담배는 제조·수입·판매 허가, 경고 문구,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,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. 또한, 현행 제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정이 보장되지 않고, 일부 소매인 명의대여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함. 아울러, 담배첨가물과 배출물에는 다양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 니코틴과 타르만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그 밖의 유해성분에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,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 평성을 높이려는 것임. 또한,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 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 마지막으로,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16조, 제17조, 제24조의2 및 제30조).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의 잎을"을 "를"로 한다.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.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• 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같은 주민등록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)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(같은 주민등록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)
-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⑤ 소매인의 지정절차,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

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)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유해성분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"연초의 잎과"를 "연초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담배"란 연초(煙草) <u>의 잎을</u>	1 <u>를</u>
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	
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	
흡입하거나, 씹거나, 냄새 맡	
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	
것을 말한다.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소매인의 지정) ①・②	제16조(소매인의 지정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소매인의 지정절차, 그 밖에	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2
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	항 본문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
정부령으로 정한다.	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
	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.
	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
	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
	라 등록・결정된 국가유공자
	및 그 가족(같은 주민등록표
	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
	<u>말한다)</u>
	2.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
	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

<신 설>

<신 설>

제17조(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) 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소매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 <신 설>

②・③ (생략) <신 설>

<u>족</u> (같은	- 주민등록	표의	배우지
및 직겨	존비속을	말하ા	구)

-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 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⑤ 소매인의 지정절차,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)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 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 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제24조의2(유해성분 검사 및 공 개)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 하여 유해성분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제30조(몰수와 추징) ① 제27조· 제30조(몰수와 추징) ① ------

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	
죄에 관련된 <u>연초의 잎과</u> 담배	<u>연초와</u>
는 몰수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